

# 연세대학교 4단계 BK21사업 미래의료방사선 융합교육연구팀 관리 운영내규

##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4단계 BK21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의 위임을 받아 4단계 BK21사업 지원을 받는 연세대학교 미래의료방사선 융합교육연구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사업목표의 달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본 내규는 연세대학교 미래의료방사선 융합교육연구팀에 적용한다.

### 제3조(사업기간)

- 동 사업의 사업기간은 7년으로 하고 그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 연차별 사업기간은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 제 2 장 교육연구팀의 구성 및 운영

### 제4조(사업팀 목표)

연세대학교 미래의료방사선 융합교육연구팀은 연세대학교 대학원과 미래캠퍼스 혁신 비전에서 추구하는 융복합 교육·연구 혁신계획과 연계하여, 글로벌 연구역량을 갖춘 MIRAE형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첨단 의료방사선분야의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원으로 도약하고자 함

### 제5조(조직구성)

교육연구팀은 팀장 외 5명의 연세대학교 방사선학과 교수진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본 사업의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팀장, 참여교수 5인 전체 6명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의 부재 시 소속연구팀 내 연구원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예산 심의, 제반 사업 운영, 연구과제의 종합적 관리 및 팀별 협력관계를 도모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사업팀 참여 연구원(대학원생)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 간 공동연구 추진, 대학원생 해외연수과정 운영,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을 기획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산업체 수요기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연구인력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학사과정과 진학 및 취업 지원을 기획한다.

## 제6조(연구행정)

본 사업의 연구행정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산학협력단 내 BK21 사업 총괄사업단이 전담한다.

## 제7조(참여교수)

① 교육연구팀에 참여하는 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임교원 중 강사를 제외한 교원(이하 "교수"라 한다)으로 한다. 참여교수는 교육연구팀이 소속된 학과에 전임발령이 되어있어야 하며, 참여교수의 소속이 학부와 대학원 동일소속임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이 다를 경우 대학원 전임발령을 내야 한다. 다만, 혁신인재 양성사업의 경우 타 학과 소속 전임 교원도 참여가 가능하나 겸임 발령이 필요하며, 그 밖의 참여교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수는 교육연구팀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교수 중 해당 기간 동안 학생지도(논문지도 등)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교육연구팀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연구팀에 참여할 수 있다.

1. 휴직, 국내외 기관 파견 중인 교수(다만,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중인 교수는 본문의 단서에 따른다.)

2. 연구년 또는 안식년 중이거나,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출장 중에 있는 교수

3. 제28조에 따른 연구 참여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교수

③ 대학 및 교육연구팀은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사업공고 시 공고한 사업 참여 요건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수 있다.

④ 대학 및 교육연구팀이 제3항에 따라 참여교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참여교수 변경에 따른 연구업적 목록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참여교수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교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참여교수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참여제한자)

① 전문기관의 장은 교육연구팀의 장이 연구윤리 위반, 협약 위반 등의 사유로 과학기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 등에 특정

기간 동안 참여가 제한된 연구자(이하 “참여제한자”라 한다)일 경우에 해당 교수를 교육연구팀에서 배제 또는 해당 교수를 교체한다.

### 제9조(참여대학원생 등)

①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신청 학과(부) 소속 전일제로 등록한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및 석사 수료생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및 박사 수료생
3.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및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

②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 다만,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교육연구팀 소속으로 근무하는 경우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③ 지원 대학원생은 교육 및 연구역량[SCI(E)급 논문게재 실적, 학진 등재지 논문게재 실적, 국제 학술대회 논문발표 실적,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그 외 연구과제 수행능력]이 우수한 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기별로 참여교수(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서 4단계 BK21 사업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④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해당 대학원에서 매주 40시간 이상 과제 관련 연구 또는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참여기간에 교육연구팀의 연구 분야와 관련하여 창업한 대학원생 중 수업과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교육연구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연구팀에 계속 참여하여 제4항의 연구장학금 지급을 제외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⑤ 교육연구팀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게 사업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석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70만 원 이상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30만 원 이상
3.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 : 월 100만 원 이상

⑥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장학금 지원 금액은 제3항의 교육 및 연구역량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하며, 4단계 BK21 사업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⑦ 교육연구팀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이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대학원생 사이에서 적정 수준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연구장학금 지급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교육연구팀의 장 및 참여교수는 대학원생에게 지급된 연구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 공동으로 관리(이하 “연구장학금 공동관리”라 한다)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없다.

⑨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매주 40시간 이상의 연구 또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연구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강의를 할 수 있다.

⑩ 교육연구팀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이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⑪ 대학원생의 참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⑫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대학원생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신진연구인력)

① 대학의 장은 교육연구팀의 사업목적 달성 및 연구력 증진을 위하여 박사후과정생과 계약교수(이하 "신진연구인력"이라 한다)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진연구인력을 채용하려는 때에는 급여·퇴직금 등 근로 조건, 신진연구인력의 의무와 책임, 계약해지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신진연구인력의 임용 주체는 대학의 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의 장은 신진연구인력의 채용과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④ 제1항에 따른 박사후과정생의 채용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사후과정생은 소속 교육연구팀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박사후과정생에게 사업비에서 월 30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사업비 지원을 받는 박사후과정생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박사후과정생이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팀에서 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약교수의 채용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교수의 채용자격은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2. 계약교수는 소속 교육연구팀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교수에게 월 30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4. 제2호의 사업비 지원을 받는 계약교수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계약교수가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팀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⑥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1차년도,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박사후과정생 중 '리서치 펠로우'로 채용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대 4년은 초과할 수 없다.

⑦ 대학의 장은 신진연구인력의 인건비를 연봉제 계약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⑧ 신진연구인력은 교육연구팀의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팀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강의를 할 수 있다.

⑨ 신진연구인력의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신진연구인력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산학협력 전담인력)

① 대학의 장은 교육연구팀의 사업목적 달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채용하려는 때에는 급여·퇴직금 등 근로 조건, 의무와 책임, 계약해지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인건비를 연봉제 계약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사업비 지원을 받는 산학협력 전담인력 중 자교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율과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각각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산학협력 전담인력이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팀에서 교육·실습 지원 등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1차년도,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⑥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자격기준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2조(국제협력사업)

① 국제협력사업이라함은 참여대학원생의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 해외연수, 국제 전시회 출품, 해외학자의 초빙 등을 의미한다.

② 국제협력 경비는 참여대학원생이 주체가 되는 경우에 한해 참여교수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③ (국제학술대회) 교육연구팀 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술대회는 교육연구팀장이 대학원생 교육·연구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 구두 발표자 중 해외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지원대학원생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대학원생 중 국제학술대회의 초청연자, 수상자, 구두 발표자, 포스터 발표의 제 1 저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2. 참여대학원생 중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공동저자인 경우 연구 수행능력 및 연구 성과를 인정받은 인원에 한해 지도교수의 추천 및 교육연구팀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한다.

④ (장·단기해외연수) 참여대학원생 중 장·단기해외연수 지원 대학원생은 지도교수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근거하여 우선 선발하여 지원한다.

1. 교육연구팀 사업의 참여 및 활동의 우수성
2. SCI(E)급 논문게재 및 국제학술대회 발표 실적
3. 국내·외 특허의 출원 및 등록 실적
4. 그 외 연구과제 수행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참여대학원생

⑤ 30일 초과 해외연수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국제화경비를 통한 지원비 외 대학원생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⑥ 부실 학술활동(논문 게재, 학술대회 참가) 예방을 위해 별표 1과 같은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참여대학원생들에게 공유·교육한다.

### 제13조(해외학자)

① 교육연구팀의 장 및 대학의 장은 교육연구팀의 목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해외학자를 초빙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② 해외학자는 해외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이어야 한다.

③ 해외학자가 사업기간 중 국내 대학으로 이직하거나 전임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용시점 이후에는 해외학자 초빙 대상에 포함할 수 없으며 해외학자 초빙 관련 지원 경비를 집행할 수 없다.

## 제 3 장 교육연구팀 지원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제13조(사업비)

① 사업비의 지출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항목별 예산편성 비중과 집행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2. 인건비(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
3. 국제화 경비
4. 교육연구팀 운영비
5. 교육과정 개발비
6.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지원비
7. 간접비

### 제14조(교육연구팀의 회계 및 계정)

① 교육연구팀의 수입과 지출은 대학의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비 관리 회계년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하되, 장관은 필요시 해당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사업비는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④ 회계관련 증빙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준용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 ⑤ 사업비 회계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 4 장 사업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제15조(평가)**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 「4단계 BK21 사업 관리운영 지침」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상시 준비한다.

### 제16조(자체평가)

- ① 사업팀은 사업연도 종료 1개월 내에 직전 사업연도기간의 평가보고서를 발간한다. (단, 사업연도 평가보고서의 발간일정은 한국연구재단 지침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 ② 자체평가보고서 발간 기획은 운영위원회가 수행한다.
- ③ 자체평가보고서는 교육부문, 연구부문, 운영부문으로 구분하고 부문별 재정, 인사 및 조직 성과관리 현황 등을 내용으로 한다.

### 제17조(성과관리)

- ① 사업팀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 인력의 동기부여를 위해 정기적인 성과관리를 실시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매 학기말, 사업연차 종료 1개월 전에 성과관리사항을 점검하고 자체 평가 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킨다.
- ③ 성과관리 대상은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이다.
- ④ 성과관리 대상은 성과업적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적으로 제출한다. 증빙되지 않는 성과업적은 성과업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성과업적 산정 방법은 4단계 BK21 사업계획서 제출 시 산출기준에 따른다.

### 제18조(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 성과관리)

- ①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은 매년 2월 중순, 당해 연도 연구성과 목록 및 증빙자료를 사업팀에 제출한다.
- ② 연구성과는 학술논문(publication, forthcoming, R&R, under review 등 구분), 학술대회 발표, 저서, 연구비 수주 실적을 범위로 한다.
- ③ 미래의료방사선 융합교육연구팀의 참여교수들의 자발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연구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한 교육·연구활동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며, 참여교수의 기여도 평가지표는 별표 3과 같다.
- ④ 사업팀은 참여교수와 신진연구인력의 연구성과를 사업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9조(참여대학원생 성과관리)**

- ① 참여대학원생이 매년 1월 중순, 7월 중순에 제출한 학술활동보고서를 바탕으로 학생 연구성과를 관리한다.
- ② 참여대학원생은 매년 1월 중순, 당해 연도 연구성과 목록 및 증빙자료를 사업팀에 제출한다.
- ③ 참여대학원생의 자발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학업성취도 및 연구활동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한 학업·연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참여대학원생의 기여도 평가지표는 별표 4과 같다.
- ④ 사업팀은 참여대학원생의 학술활동보고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대학원생 선발, 우수학생 선발, 장기해외연수자 선발, 취업추천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⑤ 참여대학원생의 성과는 사업팀 홈페이지에 수시 게시한다.

**부 칙 (2022. 01. 0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의 성과급지급을 위한 평가표 및 평가기준 [별표 3, 별표 4]은 2022년 1월 6일에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서 개정하였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업운영 방법, 추진 실적,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하여 운영·집행된 것으로 본다.



## [별표 1] 부실 학술활동(논문게재, 학술대회 참가) 예방을 위한 점검사항

질문	특징 및 주의사항
<b>부실하거나 약탈적인 학술대회</b>	
이 학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만약 학회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등록할 때 주의해야 한다.
웹사이트와 이메일 주소는 합법적으로 보이는가?	이메일이 무료 계정(예: Gmail, Yahoo 또는 Hotmail)을 사용했거나 웹사이트 URL이 무료 웹사이트라면 의심스러운 학회일 수 있다.
지도교수 또는 동료는 이 학회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가?	만약 당신이 아는 사람이 이 학회에 한 번도 발표한 적이 없다면 참석하기 전에 두 번 이상 생각해야 한다.
주최 측이 아첨하는 이메일을 보내는가?	학회 주최자가 아첨하는 이메일을 보낸다면 의심을 해 봐야 한다. 신뢰할 만한 학회는 생각을 공유(심지어 비판)하지만 당신의 자부심을 치켜세우진 않는다.
학회 주최 측은 이 학회가 권위 있는 학회라고 주장하는가?	신뢰할 수 있는 학회는 그들의 신뢰성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
누가 이 학회를 주관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당신이 알고 신뢰하는 전문적인 학술 또는 과학기술 협회나 단체에 의해 학회가 운영되지 않으면 조심해야 한다.
주최자가 신속하게 수락을 보증하는가?	의심스러운 학회는 논문 초록에 대해 짧은 의사 결정 시간을 보장한다.
주최자는 학회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할 것을 보장하는가?	신뢰할 수 있는 학회는 동료심사 없이는 논문의 게재를 결코 보장하지 않는다.
학회가 리조트나 관광명소에서 열리는가?	만약 학회가 학문적인 학회로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휴가로 선전한다면 약탈적인 학회일 수 있다.
이 학회가 사실이라고 보기에 너무 좋은가?	이 기회가 사실이라고 보기에 너무 좋다면 약탈적 학회일 가능성이 있다. 신뢰할 만한 조연자와 상의해야 한다.
<b>부실하거나 약탈적인 학술지</b>	
본인 또는 동료가 아는 학술지입니까?	만약 학술지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투고할 때 주의해야 한다.
출판사 연락처, 주소 등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이메일 주소 외에 일반 주소, 연락처가 없다면 의심스러운 학회지일 수 있다.
명확한 동료심사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동료심사, 수정 등 일반적인 학술지 출판과정이 생략된다. - 동일 논문이 반복해서 출판되거나 타 학술지 논문이 출판된다. - 논문 제출과 출판 간의 간격(기간)이 매우 짧다(1개월 이내).
논문 검색 서비스에서 색인이 가능합니까?	논문 검색 서비스에서 색인이 가능하지 않으면 주의해야 한다.
기타 특징	논문 제출 양식(format)이 조악하다.
	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학문분야를 다룬다.
	홈페이지에 논문 게재료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개인 이메일로 청구된다.
	스팸 이메일 형식으로 논문 제출을 독려한다.
	홈페이지에 해당 학술지의 영향력지수(IF)가 높다고 언급한다.

※ 더 자세한 점검을 위해서는 한국연구재단에서 발행한 “약탈적 학술지와 학회 예방 가이드”를 활용하기로 한다.

## [별표 2]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비 항목별 집행 기준

구분	집행 기준	비고	
1.대학원생 연구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석사과정생 월 70만원 이상</li> <li>박사과정생 월 130만원 이상</li> <li>박사수료생 월 100만원 이상</li> </ul>	- 학기별, 분기별, 월별 등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대학 및 교육연구팀 별로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2.신진연구인력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 300만원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준은 퇴직금 및 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포함한 액수임</li> <li>리서치펠로우에 대한 인건비는 관련 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집행 가능(최소기준 미적용)</li> </ul>	
3.산학협력전담인력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관대학 지급기준에 따름</li> </ul>	- 전임교원 인건비로는 지급 불가	
4. 교육과정 개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재개발비</li> <li>사례조사비 및 실험비 등</li> </ul>	- 교육과정 개발 관련제반 경비를 편성·집행	
5.연구활동 및 산학 협력활동 지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논문 게재료</li> <li>국내 학회, 세미나 참가비</li> <li>소모성 재료비</li> <li>창업, 취업지도, 산업체와의 산학협력 공동활동 경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회 연회비 등 참여 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 제한</li> <li>기자재 및 장비 구매비 집행 불가</li> </ul>	
6.국제화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장·단기 해외 연수 경비</li> <li>해외학자 초빙, 국제학술회의 참가비용</li> <li>해외특허 출원(등록)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석 여부 및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단기 해외연수 지양</li> <li>해외학자 초빙·활용경비는 해외학자의 국내 실 체류기간에 대해서만 집행 가능하며, 주관대학의 전문가 활용규정을 준용하여 수당, 체재비 및 항공료 등 지원</li> </ul>	
7.교육연구단 운영비	○ 인건비	- 4단계 BK21 사업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채용한 교육연구팀 소속직원 인건비	- 퇴직금 포함
	○ 성과급	- 사업 참여교수 중 우수 연구성과, 교육연구팀 운영상 기여 등에 대한 성과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체 성과급 지급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되, 1인당 연 4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평가를 통하여 지급)</li> <li>급여 성격의 성과급 활용 불가(정기적 지급 등)</li> </ul>
	○ 국내 여비	- 사업 참여 인원의 국내 여비	- 해당 대학 여비규정 준용(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 ※ 해외 학술회의 참가 등에 필요한 국외 여비 등은 국제협력 경비에서 집행
	○ 학술 활동 지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가 초청 자문료·원고료</li> <li>도서 등 문헌 구입비</li> <li>국내·외 정보 수집비 등</li> </ul>	- 참여 교수에 대한 정책 연구비, 교재 개발비, 자문료, 원고료 등의 지급 제한
	○ 산업 재산권 출원 등록비	-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비	
	○ 일반 수용비	-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연구기자재 구입비 및 시설비, 상품권 등 선물 구입비 집행 제한
	○ 회의 및 행사 개최비	- 회의비, 각종행사경비, 식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참여교수 개인에게 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을 제한</li> <li>회의비 집행시 회의록 등의 증빙자료 구비</li> </ul>
○ 기타	-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상기 집행 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비목으로 편성하기 곤란한 항목에 대하여는 교육연구팀에서 적정한	
8. 간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산학협력단 포함)의 교육연구팀 총괄 관리를 위한 경비</li> </ul>	- 간접비의 편성 비율은 연간 사업비 총액의 5%를 넘을 수 없음	

[별표 3] 교육연구팀의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을 위한 기여도 평가표

평가항목(예시)	평가점수 (기여도)	참여교수				
		A	B	C	D	E
<b>1. 참여도</b>						
1) 보고서 작성(최대 20점)	점					
2) 회의 및 세미나 참석(최대 10점)	점					
참여도 점수 소계(최대 30점)	점					
<b>2. 연구업적</b>						
1) SCI(E)논문: 주저자, 편당 10점	점					
2) SCI(E)논문: 공동저자, 편당 5점	점					
3) KCI 논문: 주저자, 편당 5점	점					
4) KCI 논문: 공동저자, 편당 3점	점					
5) 국내 특허 출원/등록, 건당 5점	점					
6) 국제 특허 출원/등록, 건당 10점	점					
7) 기타(기술이전), 건당 10점	점					
연구업적 점수 소계(최대 50점)						
<b>3. 인력양성(최대 10점)</b>	점					
<b>4. 과제 운영(최대 10점)</b>	점					
- 업무 지원						
총 합계	점					

\* 논문, 특허의 경우 실적 조사 기간 내 게재(인쇄), 출원/등록이 완료된 성과에 한함

[별표 4] 교육연구팀의 참여대학원생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기여도 평가표

평가항목(예시)	평가점수 (기여도)	참여대학원생			
		A	B	C	...
<b>1. 참여도</b>					
1) 학술 세미나 참여 횟수, 1점/회	점	회			
2) 교육 프로그램(학술 워크숍 등) 참여 횟수, 2점/회	점	회			
참여도 점수 소계(최대 10점)	점	회			
<b>2. 연구업적</b>					
1) 국내 KCI 1저자, 10점/편	점	편			
2) 국내 KCI 공동저자, 2점/편	점	편			
3) 국내/국제 SCIE 1저자, 20점/편	점	편			
4) 국내/국제 SCIE 공동저자, 4점/편	점	편			
5) 국내 학술대회 구두발표, 2점/편	점	편			
6) 국제 학술대회 구두발표, 4점/편	점	편			
7) 국내 특허 출원, 2점/건	점	건			
8) 국제 특허 출원, 4점/건	점	건			
9) 국내/국제 수상실적, 5점/건	점	건			
**국내/국제 특허 등록, 건당 4점 가산**					
연구실적 점수 소계(최대 80점)					
<b>3. 학업성취도</b>					
100% - 96% (>3.90): 10점 95%-91% (>3.50): 8점 90%-86% (>3.00): 6점 85% 이하 (≤3.00): 0점 **각 과정 수료생: 6점	점				
학업성취도 점수 소계(최대 10점)					
<b>1-3번 점수 합계</b>	점				

\* 논문, 특허의 경우 실적 조사 기간 내 게재(인쇄), 출원/등록이 완료된 성과에 한함

<별지서식 1 : 학술활동보고서 양식>

## 학술활동보고서

### 1. 신청인 정보

신청인		지도교수성명	
학 번		학위과정	석사 <input type="checkbox"/> 박사 <input type="checkbox"/>
연락처		재학 학기 수	

### 2. 논문발표실적

- \* 해당(사업)년도 논문발표실적을 기재바랍니다.
- \* 학술지 게재 및 학술대회 발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바랍니다.

국외전문학술지			
제목	등재년월	SCI	IF
		Y <input type="checkbox"/> N <input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N <input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N <input type="checkbox"/>	

국내전문학술지			
제목	등재년월	SCI	IF
		Y <input type="checkbox"/> N <input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N <input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N <input type="checkbox"/>	

국외학술회의발표		
제목	학회명	발표년월

국내학술회의발표		
제목	학회명	발표년월

국외특허등록실적		
특허 명칭	등록일자	등록번호

국내특허등록실적		
특허 명칭	등록일자	등록번호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인)

<별지서식 2 : 단기연수신청서 양식>

## 단기연수신청서

### 1. 신청인 정보

신청인		지도교수성명	
학 번		학위과정	석사 <input type="checkbox"/> 박사 <input type="checkbox"/>
연락처		재학 학기 수	

### 2. 단기연수계획

연수기간	20 . . . 부터 ~ 20 . . . 까지 ( 일간)
연수국가	
연수기관	
연수기관 책임자	
연수기관 책임자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연구계획요약:	

\* 여비는 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지급기준에 준함.

\* 여비관련 서류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지침(2013. 11)」에 따라 제출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